

1. 목적

본 규칙은 제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ERAE AMS (이하 “회사”라 한다)가 협력회사, 고객사 등 제반 이해관계자들과의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칙은 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비윤리행위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준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통상 윤리경영규칙(MS-A16)을 위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3.2 신고보상 대상자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를 통해 보상 및 보호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회사의 임직원과 회사와 관계된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로 한다.

4. 책임과 의무

- (1) 임직원은 비윤리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윤리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이 직무관련 부당행위를 강요 받거나 타인의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윤리경영실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 (3) 임직원의 제보자 신분누설 및 색출행위는 금지된다.

5. 신고방법

- (1) 비윤리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사이버제보, E-mail, 유선/Fax, 우편, 방문, 기타 중에서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 (2)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고 6 하 원칙에 따라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고시점에 현재 진행 중인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6.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금 지급기준은 (부표 1)과 같다.

7. 보상금 지급 제외

-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2)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개인적 비윤리행위 신고시
단, 공급횡령, 회사자산 절도 등과 같이 회사의 자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 가능
- (3)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윤리경영실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4)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5)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6)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공정개선, 개선제안 포상관련 사항 등)

(7) 윤리경영실 직원이 신고한 경우

(8) 신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보상금 환수

보상금 지급 후에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보상금을 환수 할 수 있다.

9. 보상 및 감경 심의

(1) 윤리경영실 팀장은 아래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보상 심의위원회’에 보상 및 감경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비윤리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금액 확정

2) 비윤리행위 가담자의 감경 여부와 정도

(2) 보상 및 감경 심의는 요청일로부터 1 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보상 심의위원회 운영’ (부표 2)에 따라 실시한다.

10. 제보자 신분보호

(1)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은 윤리경영실장이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수령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2) 제보자 신분노출 및 색출 금지

1) 임직원이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보자 및 조사협력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다도 신고자 및 조사협력자의 신분을 누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 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윤리경영실 등에 제보자 신분을 문의하거나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 된다.

3) 윤리경영실 직원은 상기 2)항의 문의를 받는 경우, 즉시 해당 질문이 본 규칙에 의거 금지된 행위이며, 처벌이 가능함을 설명하여야 한다.

4) 윤리경영실은 제보자 및 조사 협조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비윤리행위 적발과 제보자의 신분보호가 배치될 경우 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우선시 한다.

5) 회사의 임직원은 제보자에게 제보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 업무상 및 기타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6) 회사의 임직원이 상기 1)에서 5)항을 위반하여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윤리경영실은 그 노출경로를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7) 제보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윤리경영실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8) 제보자로부터 신분보호를 요청을 받으면 윤리경영실에서는 제보자가 인사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직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실에 근무토록 할 수 있다.

11. 비밀유지 서약 (부표 3)

- (1) 회사의 모든 임원은 정당한 제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서약 의무가 있다.
- (2) 회사의 시스템개발팀은 제보시스템과 관련하여 관리자 권한 제한 및 비밀유지서약의 의무가 있다.
- (3) 제보와 관계되는 주요 부서(윤리경영실, 인사팀, 총무팀) 팀원들은 비밀유지서약 의무가 있다.
- (4) 상기 서약의무 및 보안준칙 위반시 윤리경영실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요청해야 한다.

12. 보복행위 금지

- (1) 제보자는 제보를 이유로 피제보자 또는 관련 제 3자로부터 업무상 불이익 등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윤리경영실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2) 윤리경영실은 업무상 불이익 등 보복행위를 조사하여 문제가 된 임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 (3) 윤리경영실은 필요시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 등 보복을 받고 있지 않은 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조사한다.

13. 기타

본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신고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